

#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시설관리센터(4급 기구) 신설
- 총액인건비 기준준수를 위한 정원 감

## 2. 주요내용

- 총 정원 : 1,305명 → 1,302명(△3)
  - 집행기관 : 1,286명 → 1,283명(△3)
  - 의회사무국 : 19명
- 정원조정내역
  - 일반직 : 1,260명 → 1,257명(△3)
    - 3급 : 1명
    - 4급 : 7명 → 8명(+1)
    - 5급 : 65명
    - 6급 이하 : 1,184명 → 1,180명(△4)
    - 전문경력관 : 3명
  - 기타(정무, 별정, 연구, 지도) : 45명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(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대상

## **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05명”을 “1,30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86명”을 “1,28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<개정 2012. 11. 23, 2012. 12. 28, 2013. 4. 5, 2013. 6. 28,  
2013. 8. 2, 2013. 11. 29, 2013. 12. 27>

##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종·직급별	계	본청	의 사 무 국	직속기관		사업소	읍면동
				보건소	농업기술 센터		
총 계	1,302						-
정무직 계	1						-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1,257						-
3 급	1	1					
4 급	8	4	1	1		2	
5 급	65	26	1	3		10	25
6급 이하 소계	1,180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3						
일반 · 별정 계	1						-
5급 상당	1	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-						-
별정직 계	2						-
5급 상당	-						-
6급 상당 이하 계	2						-
연구직 계	-						-
연 구 관	-						
연 구 사	-						-
지도·연구직 계	41						-
지도·연구관	4				4		
지도·연구사	37						-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305명</u>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86명</u></li><li>2. (생 략)</li></ol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02명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----- <u>1,283명</u></li>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</ol>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3.5.] [대통령령 제25226호, 2014.3.5., 일부개정]

**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5.>

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(이하 "자율범위"라 한다)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>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>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>

[제목개정 2014.3.5.]

**제24조(정원의 관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7.3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

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9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

# 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제3조 관련)**

## **1. 비용수반 요인**

- 4급 증원 및 9급 감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
- 관련조문 : 충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30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(제2조)

## **2. 미첨부 근거규정**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4급 1명 증원, 9급 4명 감원으로 비용수반요인 없음  
(연간 32,849천원 감)

※ 증가되는 인건비 :  $94,759\text{천원} \times 1\text{명} = 94,759\text{천원}$

감소되는 인건비 :  $31,902\text{천원} \times 4\text{명} = 127,608\text{천원}$

## **4. 작성자**

-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